

ID	TYPE	국선보조인
----	------	-------

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종사자 조사

안녕하십니까?

사단법인 두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'아동·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 사법제도 개선 연구'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이 설문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실무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 본 설문의 결과는 소년사법제도의 개별 단계가 아동의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태를확인하고, 아동인권에 기반하여 소년사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.

질문지에 대한 응답은 이메일(jekang@jipyong.com)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. 응답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,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.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2018. 10.



연구 주관기관: 사단법인 두루 연구 책임자: 최정규 변호사 설문조사 담당: 강정은 변호사 (문의처: 02-6200-1853, jekang@jipyong.com)

I.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 및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.

1. 성별	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
2. 나이	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
3. 현재 근무지역	① 서울 ② 부산 ③ 인천 ④ 대구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
	1) 소년담당 국선보조인 재직 총 기간 (년 개월)
4. 경력	다음 질문은 변호사만 응답 바랍니다. 2) 변호사 재직 총 기간 (년 개월)



- T. 다음은 소년사법 절차 일반에 대한 질문입니다.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.
- 1.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.
- 1) 소년범죄자 중 이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. 재범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주세요.
 - 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미비
 - ②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
 - ③ 처벌 중심의 처분
 - ④ 보호처분을 종료한 소년에 대한 사후보호체계의 미비
 - ⑤ 현행 보호처분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적·물적 자원의 부족

⑥ 기타 (직접	기재)	
	- 4 01	

1순위 : _____ 2순위 : ____

2) 국선보조인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

전혀 도움이	도움이 되지	보통이다	약간 도움이	매우 도움이
되지 않는다	않는 편이다		된다	된다
1	2	3	4	(5)

3) 국선보조인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<u>인적</u>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은 편이다	보통이다	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
1	2	3	4	(5)

4) 국선보조인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<u>예산</u>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은 편이다	보통이다	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
1	2	3	4	(5)

- 5) 국선보조인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낙인*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- * 여기에서 '낙인'이란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재비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고려되어 격리나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등 소년사법 경 혐을 이유로 부정적 평가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.
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은 편이다	보통이다	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
1	2	3	4	(5)



6) 국선보조인 제도는 <u>소년범죄의 특수성</u>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은 편이다	보통이다	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
1	2	3	4	(5)

7) 국선보조인 제도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은 편이다	보통이다	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
1	2	3	4	(5)

- 2.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·우범소년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.
- 1) 귀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- 2) 귀하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- 3) 귀하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*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- * 여기에서 '우범소년'이란 가출 등 객관적으로 일정한 우범사유(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다목)가 있고,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(우범성)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합니다.



- 3. 소년사법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.
- 1) 귀하는 국선보조인들이 아동의 부모 기타 보호자가 조사나 심리절차에 원칙적으로 동석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은 편이다	보통이다	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
1	2	3	4	(5)

2) 귀하는 국선보조인들이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항소권을 잘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?
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은 편이다	보통이다	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
1	2	3	4	(5)

3) 귀하는 국선보조인들이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에게 아동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의미와 절차 진행 전반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은 편이다	보통이다	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
1	2	3	4	(5)

4) 귀하는 국선보조인들이 언론이나 대중으로부터 소년사법 대상이 되는 아동의 사생활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은 편이다	보통이다	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	
1	2	3	4	(5)	

- 4. 소년보호처분의 유형과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.
- 1) 현행 소년보호처분(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10호) 유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 - ① 그렇다.
 - ② 아니다.

[소년보호처분의 유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는 추가로 도입되어야 할 보호처분의 유형에 대해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]



2) 아래의 각 사항은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?

	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	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	그저 그렇다	약간 영향을 준다	매우 영향을 준다
1. 범죄 관련사항(동기, 죄질)	1	2	3	4	(5)
2. 범죄 경력	1	2	3	4	(5)
3. 생활환경(주거 및 경제여건)	1	2	3	4	(5)
4. 성장과정	1	2	3	4)	(5)
5. 신체 및 정신건강상태	1	2	3	4)	(5)
6. 학력 및 학교생활	1	2	3	4	(5)
7. 교우관계	1	2	3	4	(5)
8. 보호자 존부, 관심 및 보호능력	1	2	3	4	(5)
9. 소년분류심사원 생활태도	1)	2	3	4	(5)
10. 법원 진술태도	1)	2	3	4	(5)
11. 반성 여부와 피해회복노력	1)	2	3	4	(5)
12. 향후 생활계획	1	2	3	4	(5)
13. 재범 가능성	1	2	3	4	(5)

- 5.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.
- 1) 아동의 범죄에 대해 현재와 같이 소년형사사건(일반 형사법원)과 소년보호사건(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)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- * 여기에서 '소년'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.

매우 부적절하다	부적절하다	그저 그렇다	대체로 적절하다	매우 적절하다
1	2	3	4	(5)

[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]

- 2) 소년<u>형사</u>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.
- 3) 소년<u>보호</u>사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간략히 기재해 주십시오.